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5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서도원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안 제4조~제5조)
- 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 라.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사업 시행,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읍·면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건물명)		(전화:)						
신청 사항	위 치		신청인 주소와 같음.						
	위험수목 현 황		수 종		규 격		수 량	주	
								주	
								주	
	정 비 방 법	제 거	수 종		규 격		수 량	주	
								주	
								주	
		전 지	수 종		규 격		수 량	주	
주									
주									
정 비 사 유									
대체수목 식재계획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확약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은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 인접에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으며, 본 작업으로 인한 본인 재산의 손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항시 위험이 수반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시 잘려진 나무 및 가지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완료 후 수목이 제거된 산에서 토사 및 암 유출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이 훼손 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시 상기사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름철 태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 본인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신청하였으며, 작업 시행에 따른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 훼손 및 사업 완료 후 토사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하여 달성군에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세대원 동의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 세대원 동의{거주 세대원 3분의 2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조례 제 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세대주	주소	서명(인)	비고 (소유자 여부 등)
1				
2				
3				
4				
5				
6				
7				
8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세대원 주민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 식재(예정)일 :
- 수종 및 규격 :
- 수 량 :

본인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원을 대표하여 위험수목으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만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의 『대체수목 식재계획』에 의한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위험수목 제거 후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 등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택 명)

연락처(H.P)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

신 청 인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의 견 내 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2조(대지의 조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